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57
------	------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반차량 조치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6. 1. ~ 2023.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금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 제2항관련)

1. 규격 및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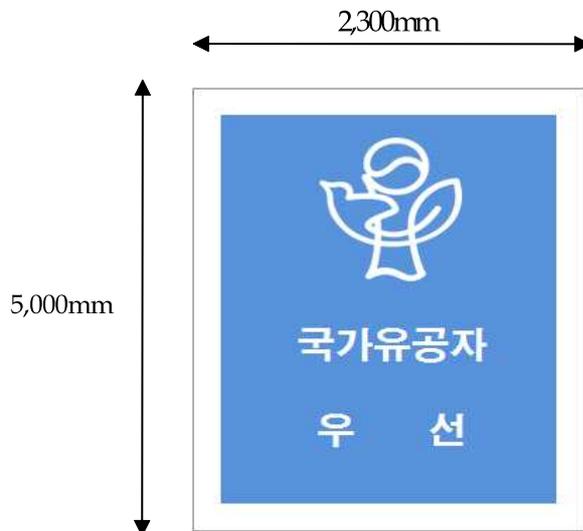
가. 규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나. 색 상 : 하늘색(바닥면), 흰색(글자, 문양)

2. 도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